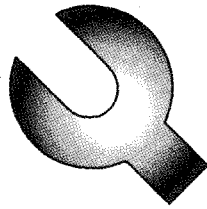




PL PL법

Product
Liability



최근 쓰레기 만두, 전기밥솥 폭발사고, 자동차 리콜 등으로 소비자의 주권회복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야 한다. PL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금력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역기능도 있다.

PL법(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 책임(PL)은 "Product Liability"로 '제조물책임'이라는 뜻이다. '제조물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9년 12월 16일에 정기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이 통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PL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기업으로,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급력과 안전도에 대해서도 고민해

재정경제부의 조사에 따르면 PL법 시행이후인 지난해의 리콜실적이 7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수거하거나 폐기한 자발적 리콜이 69건을 기록, 전체 리콜의 93%를 차지했다. 이는 2002년 대비로 9%가 상승한 수치이다.

종목별로도 식품, 전자, 가전, 극장서비스 등 다양해진 양상을 보였지만, 이중 자동차가 59%를 차지, 한 종목에 집중되어 여전히 부족함 점을 드러냈다.

리콜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2003년)는 자동차등의 이동수단 관련이 529건, 일반소재 관련이 280건을 보여 우리보다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PL법 시행 후 기업들이 분쟁에 따른 이미지

손실에 대비, 사전안전조치로 리콜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소비자의 권익은 높아지고 있다.

리콜제도란?

물품과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해 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리콜에는 자발적 리콜과 리콜명령이 있는데,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해당 제품을 수거해 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교환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하며, 리콜명령은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공식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리콜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91년으로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서비스와 유통 부문에서도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PL법 시대기업 7계명

1.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안전을 추구하라.
2. 모든 PL 대응활동을 문서화하라.
3. 협력업체의 PL 대응을 지원하라.
4. 소비자의 피해에 초동 대응하라.
5. PL보험을 맹신하지 말라.
6. 업계 공동의 PL 대응책을 모색하라.
7. 평소에 안전기업의 이미지를 쌓아두어라.

분야별 PL상담센터

분야	대상제품	전화번호
식품	식품	02)585-5052(131)
전자제품	TV, 비디오, 압력발של 등 가전제품	02)565-9325
자동차	자동차 종류	02)3660-1874
생활용품	완구, 가구 등의 생활용품	02)2102-2714
가스기기	가스보일러, 가스기기 등	031)480-2985
전기제품	조명기기, 전선 등	02)579-3291
화장품	화장품	02)782-0367
화학제품	접착제, 염료, 유기화학 등	02)780-8797
기계	냉동공조기기, 공작기계 등	02)369-7818

